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합54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봉만수

변론 종결2023. 5. 3.

판결 선고2023. 5. 24.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728,199,2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8,199,20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14. 10. 30. 섬유류 제조업, 섬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D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이 사내이사로, F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7. 26. 섬유류 제조업, 섬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G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H, F이 사내이사로, E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3) 피고의 대표이사 D와 C의 대표이사 G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원고는 2015. 3. 23. 및 2015. 3. 30. C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합계 1,445,000,000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C는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2. 9. 27. 기준 잔여 대출 원리금은 합계 728,199,202원이다.

1	2015. 3. 23.	300,000,000원	7.96%	2016. 3. 18.	333,434,180원
2	2015. 3. 23.	180,000,000원	8.17%	2016. 3. 18.	203,232,522원
3	2015. 3. 30.	965,000,000원	6.22%	2016. 3. 24.	191,532,500원
합계	728,199,202원				

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C는 2019. 6. 7.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28,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9. 6. 12.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09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피고는 2019. 6. 20.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으로 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19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한편, C는 2021. 1. 31. 폐업하였다.

라. 관련 사건 판결의 확정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55,50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55,50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69호)를 제기하여 2022. 7.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5.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728,199,2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728,199,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은 2,175,699,048원이고 대손충당금은 0원이므로 위 외상매출금 전액이 자산에 포함된 것이고, C는 여러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을 발생시키고 해당 외상 채권을 회수받은 후 다시 외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장기신용거래를 하는 회사인바, 위 외상매출금은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가치가 충분한 채권이었으므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

2) C와 피고는 2019. 5. 21. K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에게 사해의사가 없다.

3) 피고는 C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C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C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3,118,999,510원, 부채 총액은 1,522,599,251원, 자본 총액은 1,596,400,259원으로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보다 많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유일한 재산과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1) C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3,118,999,510원) 중 약 70% 상당을 외상매출금 채권(2,175,699,048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위 외상매출금 채권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는바, 이를 제외한 자산 총액은 943,300,462원(= 3,118,999,510원 - 2,175,699,048원)이다. 이는 부채 총액 1,522,599,251원에 미달하는바, C는 2019년 말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는 C의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외상매출금이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가치가 충분한 채권이었다고 주장하나, C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외상매출금은 2017. 12. 31. 기준 1,629,215,471원, 2018. 12. 31. 기준 1,589,001,425원, 2019. 12. 31. 기준 2,175,699,048원, 2020. 12. 31. 기준 1,768,285,015원, 폐업일인 2021. 1. 31. 기준 1,776,420,280원으로, 이미 2017년부터 15억 원 내지 21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은 계속하여 회수되지 않았고, 2019년 이후 위 외상매출금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C의 폐업 당시에도 17억 원이 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9년도 말에 계상되어 있던 외상매출금 2,175,699,048원도 대부분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외상매출금의 변제기, 담보 제공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마저 연체하다가 2021. 1. 31.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외상매출금 채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C의 2018년도 당기순이익은 310,787,055원이고 L(L1) 기업정보자료상 기업등급은 'bb+'인데, 2019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508,724,151원이고, 기업등급은 'bbb-'로 2019년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재무상태표 기재 자산 이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는, C에게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산정된 적정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와 피고는 K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 금액인 1,281,325,250원에 근접한 1,228,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피고가 C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1,29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유일한 재산과 다를 바 없고, 위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도 C가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C는 2021. 1. 31. 폐업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의 대표이사인 G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부부인 점, C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진이 대다수 동일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C가 현금 사정의 개선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하는데,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2021. 1. 31. 폐업하기에 이른 점, 피고는 2014. 10. 30.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 가시적인 매출실적이 없다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경 갑자기 27억 원 가량의 매출실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가 2019. 6. 20.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28,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하다고 추정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57,335,495원²⁾ 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28,199,2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728,199,20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조상은

판사이슬아

별지

1) 금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M'라는 법인이 기업신용조사 등을 통해 구축한 국내 기업신용정보, 벤처기업정보, 소비자신용정보, 각종 경제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신용조회서비스이다. 피고는 L의 기업정보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상 주요 재무정보는 C의 재무상태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757,335,495원(= ① 347,616,149원(= 위표 기재 순번 1번 잔여 대출 원리금 333,434,180원 + 원금 298,304,532원에 대한 2022. 9. 28.부터 2023. 5. 3.까지의 이율 7.96%에 따른 이자 14,181,969원) + ② 212,015,831원(= 위표 기재 순번 2번 잔여 대출 원리금 203,232,522원 + 원금 180,000,000원에 대한 2022. 9. 28.부터 2023. 5. 3.까지의 이율 8.17%에 따른 이자 8,783,309원) + ③ 197,703,515원(= 위표 기재 순번 3번 잔여 대출 원리금 191,532,500원 + 원금 166,112,605원에 대한 2022. 9. 28.부터 2023. 5. 3.까지의 이율 6.22%에 따른 이자 6,171,015원))